

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. 12. 22 선고 2021가단54901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

담당변호사 박진

피 고 1. C

2. D

변 론 종 결 2021. 11. 24.

판 결 선 고 2021. 12. 22.

주 문

1. 원고 A에게,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/117지분에 관하여,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/117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원고 B에게,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/117지분에 관하여,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/117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피고 C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나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피고 C은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, 변론기일에 출석한 바 없다.)

2. 피고 D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나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판사 양진호

